

청주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가단62126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나5105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가단62126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종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이종훈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호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정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5. 12. 11. D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라 한다). 원고와 D은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는 연 24%로 하여 매월 11일 지급하는 것으로, 지연손해금율은 연 25%로, 이자가 1회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원금 변제기는 2016. 12. 11.로 각 정하였다. 당시 D은 E마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소비대차 당시 D이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차용증에는 “위 차용내용에 대하여 주주대표로 C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주대표1)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그 기재 옆에 피고 C이 서명하였다.
- 피고 B는 이 사건 소비대차 당시 D의 대여금채무를 보증한도액 200,000,000원, 보증기간 2016. 12. 11.까지로 각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기명, 날인하였다.

○ D과 피고 B는 이 사건 소비대차 당일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5년제882호로 이 사건 소비대차에 따른 주채무,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약정 보증한도액인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20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2016. 12. 12.)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는, 약정 보증기간(2016. 12. 11.까지)이 도과됨으로써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비대차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피고 B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연대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참조).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B는 한편, 이 사건 소비대차 당시 D이 자신에게 “나와 피고 C이 책임지고 채무를 변제할 테니,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C이 주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증에 서명하기에, 자신은 D과 피고 C의 말을 믿고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불과한 것이고 그 주장사유로 연대보증채무의 불성립이나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살필 필요가 없다. 또한 위 주장은 ‘피고 C이 공동주채무자 내지 공동연대보증인이다’라는 것이어서, 피고 B 자신이 이 사건에서 패소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피고 C에 대한 구상권을 갖게 된다는 점을 이 판결로 확인받고자 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러한 구상권의 존부는 이 사건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2)

3. 피고 C에 대한 청구 판단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소비대차 당시 차용증에 “위 차용내용에 대하여 주주대표로 C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 옆에 서명함으로써 D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재 내용은 그 문언대로 ‘주주대표로서 차용내용을 동의확인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로는 해석되지 않는다(오히려, 피고 B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하였는데 피고 C은 같은 차용증에 ‘주주대표’로서 서명하였을 뿐이고, 또한 D와 피고 B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C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그밖에 달리 피고 C이 이 사건 소비대차에 따른 D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1) ‘E마트’가 주식회사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서 ‘주주대표’라고 기재한 것은 ‘투자자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 B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원고는 명목상 채권자에 불과하고 실채권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G인데, G가 2016. 7. 6. 피고 B에게 ‘연대보증인 해지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로써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는 없으나 굳이 언급하자면, 원고가 아닌 G가 실제 채권자라거나 또는 G가 원고로부터 어떤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피고 B가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한 을가 제1호증은 G가 작성한 문서이다,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채무를 면제받았다면 원고가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면 될 일이다), 위 주장을 심리하기 위해 이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다.